

추가약정서 (다함께성장 미래채권담보대출용)

(1차 협력기업용)

☞하나은행 앞

채무자(이하 “본인”이라 함)는 20 년 월 일자 거래약정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약정은 ☞하나은행(이하 은행이라 한다)과 _____(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) 이(가) 체결한 협력기업앞 다함께성장론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서 겸용)(이하 업무협약서라 한다)을 근거로 1차 협력기업인 본인이 다함께성장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서비스의 가입)

- ① 본인은 은행의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다함께성장론 중계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로 합니다.
- 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중계시스템 회원가입시 중계시스템 운용사업자와 약정한 바에 따르며, 은행은 중계시스템 운용 사업자가 통보한 본인의 이용료 지급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출 금액에서 이용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- ③ ②항의 고객부담 비용 외에 은행의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중계시스템 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(결제계좌의 지정)

은행의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과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결제계좌를 지정 운용합니다.(☞하나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합니다.)

계좌번호	예금주

제 4 조 (발주서 전송, 취소 및 변경)

- ① 발주서는 구매기업과 본인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기업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은행 및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
- ②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통보한 이후 본인과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③ 은행이 발주서를 근거로 본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제 7 조 ④항에 따라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④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, 은행은 발주서를 강제로 취

소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은행은 본인 및 구매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

⑤ 구매기업의 발주서 취소 또는 변경은 본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은행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불가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대출의 신청 및 실행)

① 은행은 발주서 금액의 80% 범위내에서 대출신청가능금액을 당행 인터넷뱅킹에 게시하기로 하며,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② 대출신청은 발주서 정보가 은행 인터넷뱅킹에 게시된 날로부터 발주서상의 납품기한 전영업일까지 발주서 단위로 신청하며, 분할신청 가능합니다.

③ 본인은 약정한도 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, 대출금은 제 3 조에서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받기로 합니다.

④ 대출이자는 취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대출취급일에 일괄선취하기로 합니다.

⑤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제6조 (대출기간)

① 대출한도 약정기한은 은행과 구매업체와의 업무협약서 유효기간 이내로 약정하기로 합니다.

② 개별대출의 실행기간은 발주서 상의 납품기한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되, 최장 180일이내로 합니다.

③ 계약의 특성, 계약 변경 등으로 납품기한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감안하여 대출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기로 하며, 이 경우 대출기간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7조 (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

① 대출금은 개별대출의 대출만기일(대금지급일)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거나, 구매기업이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② 결제자금의 지급방식이 현금결제가 아닌 경우, 즉 구매기업이 은행앞 전송한 본인의 매출채권 결제일이 매출채권 내역 전송일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함께성장 외상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. 이를 위해 본인은 은행과 다함께성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합니다.

③ 제1,2항에 의거 개별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는 순서는 미래채권담보대출 만기일이 빠른 순서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④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 취급후 관련 발주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인이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며, 대출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⑤ 대출 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이 통보한 매출채권 금액이 대출실행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에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